

••• 특집 —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2010년 지방예산의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조 봉 업

I. 머리말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미국·일본·EU 등 세계 각국은 작년 -5.7~ -2.8%マイ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0년도에도 0.9~1.4%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경제는 빠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작년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비교적 선방하였고, 이어 '10년도에도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조기집행, 정부 추경 등으로 당초 예산규모대비 26.2조원이 증가된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세수 감소 및 교부세 감액 등으로 예상되던 결손을 지방채발행, 예산효율화, 지방세 체납 대책 등으로 감소·보완하도록 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돌이켜 보면 '09년도의 지방재정분야의 성과로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된 「지방재정조기집행」의 성공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대표되는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편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지방채발행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강화 등 경제위기에 재정여력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10년도는 국제적 공조 속에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09년도에 비해 실물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두드러지지 않고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10년도 지방재정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적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 내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되는 지방소득·소비세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전년도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규모의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도 승화될 수 있도록 민간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을 통한 예산집행 감시 강화 등 건전 재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II.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현황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

'10년도 당초예산은 139조 8,565억원으로 '09년 당초예산 137조 5,349억원 대비 1.7% 증가되었다. '10년도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1.7%는 '09년도의 10.1%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치단체 내 또는 자치단체간 주고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출되는 예산순계로 집계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06조 4,994억원, 특별회계는 33조 3,570억원으로 파악된다. 시·도 예산은 총 규모 중 63.8%에 해당하는 89조 2,111억원, 시·군·구 예산은 36.2%에 해당하는 50조 6,45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 재원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84조 6,079억원인 60.5%로서 전년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서민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지방세는 '09년도 당초 예산을 약간 상회한 수준인 1.7%로 책정하고, 세외수입은 '09년도보다 6.3%나 축소하여 편성하는 등 예년의 재원 규모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수적 예산편성의 결과로 보인다.

세수감소 등 재정력 약화에 대처하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지방채무의 급증과 금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하반기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이 보다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존재원의 경우에도 내국세 감소와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인하여 '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분	'09년 당초예산	비중(%)		'10년 당초예산	비중(%)		증가율(%)
		100	100		100	100	
계	137조 5,349억원	100	100	139조 8,565억원	100	100	1.7
자체재원	845,264	61.4	60.5	846,079	60.5	60.5	0.1
지방세	470,670	34.2	34.2	478,785	34.2	34.2	1.7
세외수입	337,708	24.5	22.6	316,375	22.6	22.6	△6.3
지방채	36,886	2.7	3.6	50,919	3.6	3.6	38.0
의존재원	530,085	38.6	39.5	552,486	39.5	39.5	4.2
지방교부세	265,081	19.3	18.3	255,454	18.3	18.3	△3.6
국고보조금	265,004	19.3	21.2	297,032	21.2	21.2	12.1

세출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경비가 포함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신종플루 방역 등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의 세출규모가 각 1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대책 및 안전분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확대(10.6%)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과 국가시책,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 등 의무적 지출확대로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의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공약사업 등의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세출 기능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기능별(분야)	2010년	2009년	증감율
계	139조 8,565억원	137조5,349억원	1.7%
일반공공행정	119,448	103,270	15.7%
공공질서 및 안전	21,768	19,680	10.6%
교육	81,385	78,785	3.3%
문화 및 관광	77,951	70,938	9.9%
환경보호	149,009	143,932	3.5%
사회복지	265,342	241,455	9.9%
보건	22,250	19,241	15.6%
농림해양수산	97,233	92,593	5.0%
산업·중소기업	30,031	29,251	2.7%
수송 및 교통	164,801	183,886	-10.4%
국토 및 지역개발	128,439	145,149	-11.5%
과학기술	4,375	7,419	-41.0%
예비비	22,139	23,561	-6.0%
기타(행정운영+기본경비)	214,394	216,189	-0.8%

2. 2010년도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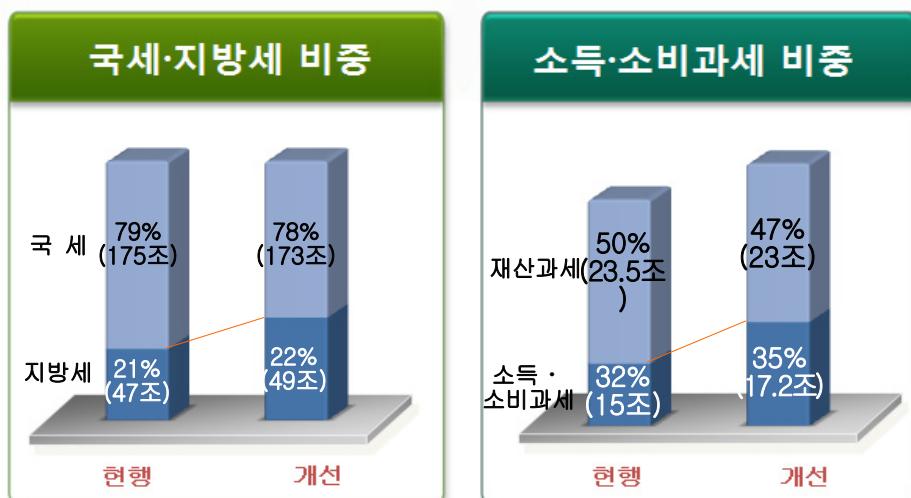
'08년 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09년 2월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부터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09년 말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43조원)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며 부동산교부세 존속기한을 연장('14년 까지)하여 전액을 시·군·자치구에 균형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면 지방재원 규모는 1.84조원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소비세 2.43 – 교부세 자연감소 0.47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 0.12 = 순증 1.84조

이는 의존재원과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의 요청, '08년 발표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현행 21%에서 22%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32%에서 33%p 상승하여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방소비세 중 매년 3천억원을 10년간 출연하여 총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인수 및 포괄적 보조금의 지원방식 등으로 비수도권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로 인한 재정지원의 효과가 수도권 0.34조원(23%), 비수도권 1.14조원(77%)으로 배분됨으로써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지방소비세 도입전('09년)	지방소비세 도입후('10년)
수도권 비중	61.0%	59.6%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재정이 국가재정 중 5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2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치단체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하며,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1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09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1.4%p, 재정자주도는 3.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로서 '09년도 보다 23개 자치단체가 증가하여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예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단위 : %

지 표	유형별	전 국	광 역				기 초		
			특별시 (본청)	광역시 (본청)	도 (본청)	특별자치도 (본청)	시	군	자치구
재정 자립도	평균	52.2	83.4	56.3	32.0	25.7	40.0	18.0	35.4
	최고 (단체)	-	83.4 서울	70.0 인천	59.3 경기	25.7 제주	67.4 경기성남	48.6 울산울주	82.9 서울중구
	최저 (단체)	-	-	43.2 광주	11.5 전남	-	9.3 전북남원	8.6 전남고흥	11.4 부산서구
재정 자주도	평균	75.7	84.2	70.0	45.0	61.0	69.1	62.2	57.9
	최고 (단체)	-	84.2 서울	76.7 인천	61.4 경기	61.0 제주	91.6 경기파천	72.9 강원홍천	89.3 서울강남
	최저 (단체)	-	-	65.2 광주	30.2 전남	-	52.2 전남목포	48.0 전남신안	30.8 부산북구

※ '10. 1. 현재 잠정 집계된 수치임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결손을 보전하는 제도개편이다. 그 보전의 규모를 떠나 자치단체 재원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기초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편된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10년이 또 한번 지방재정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 2010년도 지방재정 중점 추진정책

1. 경기진작 및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1) 전략적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난해에 이어 효과적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등 서민층 실업대책, 4대강 정비 사업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SOC 확충과 서민 체감·민간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월별·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다. 조기집행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며, 우수기관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전 자치단체에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09년도에 효과적인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비상적 한시조치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후 제도화 또는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의 조기확정,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조치나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각종 조치는 제도화하거나 확산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의 확대조치 등은 종료할 예정이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매년 3천억원씩 10년간 적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인수 및 포괄적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자금지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금의 설립 취지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기금의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조합 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 확충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



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최근 경기회복 징후가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내국세 감소와 '08년도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입부족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재정 재원마련과 재투자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효율화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출 예산 중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이상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3만명)에 조기 재투자 및 자치단체별 자율절감을 통하여 절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재투자할 계획이다. 세입증대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추진, 공유재산의 개발 및 임대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자치단체·기관간 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하여 중복투자 사업 추진 등 비효율에 의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시스템 개선 및 예산 성과금 지급을 확대 시행하고 자치단체간 연계 및 확보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4) 「사업예산 성과관리」 도입 추진

지난 '08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지방예산과 성과창출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별 성과관리 체계상의 전략·성과목표를 직접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개편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객관화를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재무결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체계로 구현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단계

구 분		기반 조성('10)	본격 확산('11~'13)	성숙('14~)
대상 기관	광역	성과예산서	예산성과 보고서	좌 동
	기초	-	성과예산서	예산성과 보고서
관리방법		정책사업명으로 구분	좌 동	예산사업 별도 구분
평가방법		통합평가	좌 동	좌 동
법 제 화		-	-	의무화규정

'09년도에 서울·강원·전북 3개 자치단체에서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였고, '10년도에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성과관리에 입각하여 재정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예산서가 작성될 것이다.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11년도부터 '13년도에 걸쳐 기초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1)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제도 설계

현행 결산 기준 재정분석 제도는 결과 공개시점까지 1~2년의 시차가 존재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조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지방재정의 실시간 진단과 사전경보체계 확립을 준비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재정 조기경보체계 (EWS, Early Warning system)」는 지방세 징수, 낭비성 경비지출, 채무관리 등 자치단체별 재정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와 시스템이다.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재정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 집계·분석하고 재정운용 불건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재정진단·컨설팅을 실시하며 재정진전화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제도를 개편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청사신축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무 등 주민의 주요한 관심 재정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전국을 종합 비교·분석하여 주민·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미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자치단체 위기관리제도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재정위기의 요건과 절차, 재정위기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건전화조치 및 회생 절차 등을 설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도 지방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모든 자치단체의 채무관리계획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채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며,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하였던 포괄 지방채 발행 등 예외조치들은 정상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2) 민간재정지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그간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출연·출자 등으로 인하여 민간재정지원금의 집행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민간재정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그 지원의 적법성 및 적정성의 확보가 자치단체 예산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보조나 출연·출자에 대한 법적 정의,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법제화하고 민간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추진방안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행규정 중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법제화하는 한편, 민간보조의 집행기준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정 사용시에는 환수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의 제한 및 부당수령에 대한 강제 환수 및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출연·출자의 지원에 대하여도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출연·출자기관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자치단체 낭비성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통제 강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와 함께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낭비성 있는 주요예산의 집행내역을 지표화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자발적 감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을 통한 예산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등 과다편성 되어 낭비요인이 되기 쉬운 경상적·소모적 경비와 선심성 집행이 우려되는 민간이전경비 등 낭비성 예산지표를 발굴하여 지표화하고,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며, 공시내역을 근거로 전국 단위의 분석과 언론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를 신고하여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예산낭비대응전담반(가칭)”을 설치하여 신고사례를 조사하고 감사를 의뢰하여 위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를 삭감하고 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IV. 맷음말

올해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확보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운영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그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지방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의 재정자주성과 자율성을 확장하고,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지방예산제도와 관련된 주요정책도 자치단체 재정자율성의 확대와 건전재정운용의 양면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세수 감소 등 재정력 약화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 새로이 도입되는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균형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격차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와 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처하여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선진적인 지방재정운영 및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전에 맞서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